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##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 지 헌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1일

3. 제안이유

인간활동을 통해 널리 퍼져 있는 플라스틱 위해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및 제거로 충청북도 내 생태환경 보호 및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라. 미세플라스틱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6조)

마. 미세플라스틱 저감·제거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7조)

바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○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생활의 편리함

을 주는 동시에 인체에 흡수되어 장기기능 장애와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고, 생물계 먹이사슬에 축적되어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,

또한 2015년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83억 톤(한국에너지공단, 2019)으로 그 중 9%만 재활용이 되었을 뿐 나머지 약 63억 톤은 어딘가에 버려지거나 남아있는 실정임.

따라서,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및 제거로 충청북도 내 생태환경 보호 및 충북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조례 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,

- 2019년 이후 급격하게 미세플라스틱의 환경오염에 대해 이슈화 되면서 관련 학계와 협회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거동 및 인체 위해성에 대해 활발히 연구되고 세미나도 진행중에 있음
- 이해 반해, 관련 조례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심각한 위해성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전라남도 등 3개 지자체만 조례로 제정된 상태임.
- 이에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플라스틱 위해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및 제거로 충청북도 내 생태환경 보호 및 충북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.
- 안 제3조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및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5조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 하기 위한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6조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7조는 미세플라스틱 저감·제거기술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8조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및 자연순환, 재활용 촉진 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2.11.23.~'22.11.2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-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, 기타 “**특이한 사항**”은 없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본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이 생물계 먹이사슬에 축적되어 생태계 뿐만 아니라 인체 기능에 다양한 부작용과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질임을 인식시키고,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및 제거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위기의식을 확산시키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,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및 제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생태환경 보호와 충북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